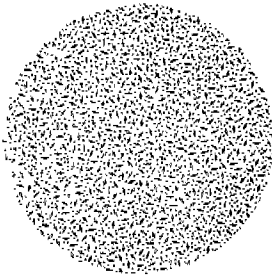


1. 序 言

主要先進國의 産業 安全管理制度比較

Comparison of Industry Safety Control System Between Main Advanced Countries



李 根 喆

本協會編修委員

1960年代의 電子産業과 함께 신속히 발전한 分野로서 에너지와 化學工業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電子産業은 産業構造의 확대와 技術의 高度化를 促進함으로써 事故의 大形化와 最高度의 産業技術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時代的 趨勢속에서 1970年代를 맞이하여 에너지패턴의 國際的인 變化는 또다른 災害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함으로써 安全保健管理体制에 一大 手術을 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狀況의 急進的인 變化는 美國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安全保健体制의 全面的인 再檢討를 結果 1970년에 탄생한 것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라고 하는 安全保健法이었다.

한편 日本은 1972년에 美國에 이어 「勞動安全保健法」을 制定함으로써 先進國임을 誇示하게 되었다. 英國은 1973년에 体制整備에 착수하여 1974년에는 美國의 安全保健法을 英國의 지리적 조건과 사회적 諸 要件을 가장 適切하게 조화시킨 統一的인 安全保健管理体制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安全保健法の 制定이었다. 「Health and Safety of Work Act 1974」

그러나 世界에서 가장 오랜 安全의 역사를 가진 서독은 安全保健体制을 再整備하여서 安全技師, 安全專門委員 및 産業保健醫師(保健管理者)에 관한 法律을 公表하게 된 것이다.

스웨덴은 1973년에 勤勞者保護法을 改正하여 企業의 安全管理体制를 조직화하는 한편 機械設備 등의 設備製造에 있어서 事前承認制를 設定함으로써 安全에 의한 生産性의 向上과 더불어 製品의 安全化를 도모하여 技術의 新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作業環境法을 制定하여 安全保健問題를 보다 高次元的인 次元에서 運用을 企圖하였다. 특히 日本은 1977년의 1次改正을 통하여 原子爐와 有害危險物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였으며 1980년의 2次改正에서는 建設業의 安全을 강화하였다.

上記한 바와같이 先進國은 1970年代 初半에 일제히 安全保健管理体制를 整備改正하는 등 國家의 次元에서 보다 根本的인 체제정비를 斷行하게 되었다.

이들 先進國의 安全保健管理体制는 1970年代 以前에는 極히 制限된 事業場의 概念속에서 安全保健管理를 推進해 왔으나 現代社會의 産業依存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모든 機械器具나 設備등에 의한 災害事故가 增加함으로써 人間的 福祉와 企業繁榮을 위한 産業技術이 아니라 危險이 수반된 生産에서는 安全性이 없이는 企業이 繁榮할 수 없다는 結論에서 安全優先政策이 대두된 것이다.

이와같은 体制整備의 方向設定을 보면 美國은 1960年代의 우주과학기술의 개발과 化學 및 電子工業發展에 따르는 技術向上的 도모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産業構造의 확대는 單한건의 災害事故로 因하여 엄청난 物的 損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産業現場에서 누출된 有害危險物에 의한 社會的 被害는 매우 엄청난 것으로서 公害安全問題가 浮上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先進各國은 安全基準의 강화와 中央統制機能의 강화라는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方策의 一環으로서 美國과 英國은 勞動省에 安全保健廳을 新設하였으며 以外에 프랑스, 스웨덴, 서독등은 一律의으로 勞動省傘下에 安全保健의 종합적 감독기관으로서 安全保健專擔機關을 設置하게 되었다.

2. 先進諸國의 安全保健制度 特徵

美, 英, 프랑스 및 西獨의 安全保健法은 70年代 초반에 전반적인 再整備를 거쳐 確立되었으며 一般의인 공통점은 農業이나 建設分野를 安全保健法에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點이다.

또한 適用對象에 있어서는 全勤勞者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事業主에 대한 適用基準을 보다 구체적으로 強化하고 있는 것은 産業技術의 고도화에 따르는 一連의 대응적 조치라고 간주된다.

또한 上記한 4個國들은 다같이 勞動省에 安全保健을 위한 專擔機關으로서 安全保健廳을 設置하고 安全保健政策의 最高機關으로서 安全保健委員會를 國家最高機關으로 설치하여서 勞動部長官에게 모든 安全基準의 制定權을 賦與함과 동시에 基準의 作成을 支援하고 있다.

(1) 美國

美國은 1971年 4월에 노동성의 한 기관으로서 安

全保健廳(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設置하고 全國 10個 地域에 地域事務所를 그리고 그 傘下에 90餘個의 地方事務所를 두고 있다. 또한 本部直轄로 3個의 研究所를 設置하는 등 安全技術開發에 注力하는 体制을 갖추고 있으며 龐大한 國家規模로 因하여 民間團體를 광범위하게 지원육성하는 소위 民間主導形의 安全保健體制로서 中央政府의 安全保健廳은 주로 勤勞監督과 기술지원에 重點을 둔 安全行政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의 安全協會(N. S. C)는 綜合的인 安全協會로서 다른 전문안전단체와 有機的으로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유지해 가고 있다.

(2) 英國

英國은 美國과 같이 노동성내에 안전보건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과 安全保健委員會(The Health and Safety Commission)를 1974年과 1975년에 設置하고 安全保健委員會에서 國家的 安全保健政策을 樹立하고 있다.

또한 各 安全團體 및 政府各機關의 安全保健에 관한 정보제공, 調印, 各機關間의 業務調整 그리고 提案등의 統一的인 安全保健政策施行을 위한 產婆的인 機能을 다하는 이외에 執行機關으로서 安全保健廳은 任務活動을 다하고 있다.

특히 民間團體인 安全協會(ROSPA)의 機構내에 家庭安全, 公衆安全, 農業安全, 道路 및 水道安全을 담당할 專擔部署를 設置運營하는 것을 볼 때 단순한 事業場內의 安全管理에 局限하지 않고 汎國民的으로 安全活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日本

日本은 美國과 英國의 折衷式 조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勞動省에 安全衛生部를 그리고 最近에는 環境管理室을 두어 危險物管理와 環境오염문제를 處理하고 있다. 傘下에는 研究所와 民間團體로서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를 設置하여 同協會도 하여금 모든 教育과 檢査 및 技術指導事業을 專擔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것은 事業場의 最一線 安全擔當者인 作業主任者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資格化하여 勞動者自身 教育을 實施하는 한편 機械器具등에 대한 製造

許可權과 檢査는 勞動長官이 갖고있다. 以外에 보일러에 대한 安全管理基準도 設定되어 있는 點이다.

日本에서도 美國과 같이 國家規模에 따라서 各專門分野別로 安全團體를 設置하여 中央防災協會와 相互有機的이며 補完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防災協會 傘下에 전문교육기관을 運營하도록 支援하고 있다.

또한 企業의 自律的인 活動의 촉진 및 措置를 講究하는 등 産業災害防止에 관한 綜合的인 대책을 推進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健康을 확보함과 同時에 쾌적한 産業環境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4) 西 獨

西獨의 安全保健法制度는 3가지 즉 營業法, 國家保安法, 勞動安全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 營業法은 營業에 關聯되어 있는 事項을 規制하고 있으며 安全 및 保健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어 있어 모든 産業에 적용되고 있다. 둘째로 國家保險法은 종래 獨立하여 있는 各種 勞動災害保險 즉 一般産業勞動災害保險法, 農業勞災保險法 및 船員勞災保險法을 하나로 統一한 것으로서 勞動災害가 發生하였을 때 被災害者에 대한 醫療的인 복구 및 被災害者나 그 遺族에 대한 補償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세째로 勞動安全法은 1973年 12월에 制定된 새로

운 法律로서 正式으로 「産業醫, 安全技師, 其他 勞動安全專門Staff에 관한 法律」이라고 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安全管理組織整備를 目的으로 하는데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高等審議會를 國家機關長級の 勞使代表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勞動部長官을 支援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災害防止協會도 그 最高機關인 運營위원회에 産業分野別 勞組代表가 참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全國安全協會도 產災保險에서 10%의 지원금을 받아 運營하고 있다. 以外에 캐나다의 安全協會도 產災保險에서 運營支援을 받고 있다.

上記한 단체들은 自体研究所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安全保健圖書館을 보유하여 情報의 모집 및 전달, 교육훈련의 實施, 事業場에 대한 綜合診斷事業 도서출판, 機械의 防護裝置, 有害物質의 평가 소음 진동, 粉塵對策 및 環境安全對策 등의 광범위한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上述한 모든 民間機關(安全協會)은 教育和 弘報를 主軸으로하고 2~3個月 만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함으로써 對國民의 弘報와 企業체를 위하여 安全技術 情報提供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안전협회에서는 小數의 安全雜誌만이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美國

〈丑-1〉 世界各國의 産業安全管理制度比較

國名 內容	美國(1970年改定)	英國(1974年改定)	日本(1972年改定)	프랑스(1974年改定)	西獨(1973年改定)
關係法令의 特徵	職業安全保健法(OSHAot) 1. 安全保健廳新設 監督強化 2. 3個諮問委員會 設置 3. 農業安全分野包含 4. 勞動長官緊急措 置權賦與 5. 研究事業強化 (研究所 3個所設置) 6. 民主導形(民間 安全團體) 7. 安全保健委員會 및 技師制度	保健安全法(HSE) 1. 가사使用者除外 한全勤勞者 2. 各部處安全業務 統合監督強化 (一般工場, 爆發場, 炭鐵, 原子力, 公害) 3. 農業分野包含 (農業監督官163명) 4. 監督과安全保健 事業分離 5. 安全保健委員會 및安全技師制度	勤勞安全保健法(安 保法)改定 1. 事務者義務強化 2. 事務所및建物質 貸業適用 3. 危險機械製造許 可勞動長官 4. 災害事故報告義 務化 5. 災害豫防團體育 成(分野別) 6. 安全委員會및安 全保健技師制度	勞動法典(CT) 1. 勞動者災害防止 局, 新設監督強化 2. 農業分野包含 (農業安全) 3. 建設分野, 工事 金額基準, 安全 適用 4. 安全保健委員會 및安全技師制度 5. 高等審議委員會 (職業危險防止高 等審議會) 設置 國家機關長, 經 濟團體長, 勞使 代表로構成	勞動安全法(GBSFA) 1. 企業의安全保健 組織強化 2. 特殊設備勞動長 官製造許可 3. 監督官은技術監 督官制度

(46페이지로 계속)

기사업법상 전기공급규정에서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파소컴의 소프트가 꺼지다

최근의 또 하나의 경향은 일반가정에서 「파소컴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불평이 늘어나게 된 일이다. 몇시간이나 걸려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는데 순간때문에 순식간에 그 프로그램이 꺼지고 말았거나 워어프로에서 長文을 다 쓴 순간 그 문장이 사라진 예도 있었다.

自衛에 필수품 補助電源裝置

이러한 천둥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는지.

「최근의 기술을 구사해도 우리를 송전하는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에도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의 여러분들은 꼭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東電에서는 말하고 있다.

전력회사측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이용자

측에서는 방지라는 방법이 있다. 無停電 電源裝置(CVCF)라고 부르는 補助 電源설비이다. 이것은 일종의 축전지로서 전기의 순단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압을 보충하여 언제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 장치를 설치해 두면 전압저하로 컴퓨터나 산업로봇이 다운되거나 오동작하는 일은 없다.

CVCF는 瞬斷對策으로서는 최고이나 값이 대단히 비싼 것이 흠이다. 일반의 파소컴, 워어프로용으로 105만원이나 한다. 파소컴 본체 값과 거의 같은 값이다.

은행의 계산센터용으로는 7천만원 이상, 큰 공장용은 3천5백만원 이상이나 한다. 이만큼 큰 투자를 해도 사용하는 것은 많아야 일년에 몇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영자도 쉽게 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생산공정이나 컴퓨터 정보를 지키려면 CVCF를 설치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

(15페이지에서 계속)

과 英國의 安全協會에서 發行하는 安全專門誌 中에는 家庭安全(Family Safety)이 約 160萬部以上 季刊으로 定期的으로 發行하고 있으며 또한 National Safety News가 月刊으로 4萬部가 발행되고 있다. 英國에서도 經營者, 監督者, 安全要員用的 Safety News를 主로하는 月刊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ulletin이 16,000部나 發行되고 있다고 한다.

3. 韓國의 産業安全管理制度

團體로는 産業安全協會가 民間協議체로 構成되어 있고 사업체의 安全診斷과 教育등을 實行하고 있다. 또한 國內의 産業安全分野는 政府의 行政体系로는 多元化되어 있으면서도 相互 獨自의인 관계법을 갖고 있어 紐帶 및 關聯條項의 범위에서 安全의 死角地帶가 形成되어 있으며 한 企業에 대하여 다른 여러개의 技術基準規制를 받을 뿐만 아니라 企業內의 安全要員에 대한 教育이나 檢査등이 중복되는 등 施行上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國內에서 設置運營되고 있는 安全團體로는

① 勞働部의 安全保健協會 ② 勤資部의 가스安全公社 및 鑛山保安協會 ③ 交通部의 交通安全振興工團 ④ 內務部의 消防安全協會 ⑤ 熱管理公團 ⑥ 電氣安全公社 ⑦ 建設部의 건설협회등으로서 이들 中에서 綜合的인 安全業務를 다루고 있는 機關은 該當分野의 專門業務만 처리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主要 先進國의 安全團體는 全部 自体 研究所를 갖고 있으나 國內安全團體는 自体研究所가 全無하며 安全保健活動의 適用範圍가 事業場 中心의 근로자 安全에서 脫皮하여 家庭, 農業, 火災爆發등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勞働部傘下의 勞働科學研究所가 유일한 安全保健研究所로서 檢査와 장비등을 갖추고 있을 뿐이며 以外에 勤資部의 가스安全公社가 檢査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단지 가스分野에 국한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産業安全保健法을 改善中에 있으며 政府에서는 84年 12月부터 85年 3月까지 産業安全管理 綜合診斷을 실시하여 새로운 對策을 政府次元에서 模索中에 있다. *